

과업내용서

용역명 : 2022년 자가측정(대기, 수질, 약취) 용역
연간단가 계약

2021년 12월



기계그룹/자원회수시설사업소

과업내용서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자가측정(대기, 수질, 악취) 용역 연간 단가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식회사(이하 “발주자”)와 측정대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자가측정(대기, 수질, 악취) 용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 1조(목적)

본 과업은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굴뚝 배출가스, 폐수 방류수 및 배출구 악취의 오염물질 분석을 측정대행업체에 대행하게함으로서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제 2조(관련법규)

-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가측정)
 - ②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조(용역범위)

용역범위는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의 자가측정(대기, 수질, 악취) 연간용역을 범위로 한다.

① 시설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 북로 1050번길 78-13
인천국제공항 자원회수시설
 - 배출시설용량
 - 소각시설(70톤/일) : 2기
 -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 3기
 - 폐수배출시설($36\text{m}^3/\text{일}$) : 1기
 - 악취방지흡착탑($230\text{m}^3/\text{min}$, $500\text{m}^3/\text{min}$) : 2기
 - 방지시설용량
 - 흡수에 의한 시설(반건식반응탑, $339\text{Sm}^3/\text{min}$) : 2기
 - 여과집진시설(Bag Filter, $339\text{Sm}^3/\text{min}$) : 2기
 - 촉매반응 이용 시설(선택적 촉매반응탑, $344\text{Sm}^3/\text{min}$)

② 측정항목 및 주기

분야	측정항목	측정주기	비고
대기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납화합물, 벤젠, 먼지, 아연화합물,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크롬화합물, 수은화합물, 구리화합물, 황화수소, 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화합물, 니켈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브롬화합물, 불소화합물,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페놀화합물, 포름알데하이드, 스틸렌,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 1,3-부타디엔,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매연	1회/기·격월×2기 (총 12회/년)	소각시설 굴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회/기·분기×2기 (총 8회/년)	소각시설 굴뚝
	먼지	1회/년	저장시설(3EA) 후단
	황산화물, 염화수소, 유량	1회/기·년×2기 (총 2회/년)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2point)
	먼지, 유량		
	질소산화물, 유량		
수질	pH, BOD, TOC, SS, T-N, T-P, 불소, 음이온계면활성제, 아연, 구리, 용해성철, 용해성망간, 바륨, 셀레늄, 노르말헥산(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페놀, 시안, 크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납, 6가크롬, 크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디클로로메탄,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니켈,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페놀, 온도	1회/분기	폐수방류구
		1회/년	유량조정조
악취	복합악취	1회/반기	소각시설 굴뚝
		1회/반기	부지경계
		1회/반기	악취방지흡착탑(2point)
		1회/분기	신도시 지역(6point)

③ 측정지점 및 방법(대기)

- Sampling 지점 : 소각시설 굴뚝 측정공(2개소)
 - 측정주기 : 1회/기 · 격월 이상(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회/기·분기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소각시설 정상 운전기간 중)
 - 측정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검출한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 Sampling 지점 : 고체상물질 저장시설(3개소)
 - 측정주기 : 1회/년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
 - 측정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검출한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 Sampling 지점 : 방지시설 전·후단(6개소)
 - 측정주기 : 1회/년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소각시설 정상 운전기간 중)
 - 측정방법 :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검출한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④ 측정지점 및 방법(수질)

- Sampling 지점 : 처리수 배출구 측정공
 - 측정주기 : 1회/분기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폐수처리설비 정상 운전기간 중)
 - 측정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검출한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 Sampling 지점 : 유량조정조
 - 측정주기 : 1회/년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
 - 측정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검출한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⑤ 측정지점 및 방법(악취)

- Sampling 지점 : 소각시설 굴뚝 측정공 및 부지경계
 - 측정주기 : 1회/반기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소각시설 정상 운전기간 중)
 - 측정방법 : 악취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 Sampling 지점 : 악취방지흡착탑(2개소)
 - 측정주기 : 1회/반기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소각시설 정상 운전기간 중)
 - 측정방법 : 악취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 Sampling 지점 : 신도시 지역(6개 지점)
 - 측정주기 : 1회/분기 이상
 - 측정시기 : 주간대(소각시설 정상 운전기간 중)
 - 측정방법 : 악취공정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분석법에 따를 것.

제 4조(용역 수행 기준)

- ① 용역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 ②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시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 ③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내용서 내용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있어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④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⑤ 분석결과에 대한 민원 등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험 분석하여야 한다.
- ⑥ 대기, 수질 및 악취 측정방법 및 측정주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측정기록부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의 자격기준{측정대행업(대기, 수질, 악취) 및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대기, 수질)}은 용역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제 5조(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측정주기에 따라 측정한 후 측정 결과에 대한 내용을 익월 말일 전 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的 의견에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 6조(용역수행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① 용역 중 보완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측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②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 7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발주자”의 요구에 의거, 필요 시 2023년도 연간단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단가는 2022년도 계약금액에 준한다.

제 8조(안전관리)

자가측정용역 시행 전 또는 용역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9조(근로자관리)

용역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측정대행자의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자”的 판단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해당 측정대행자의 해당 자격 기준이 있는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 10조(재해 및 사고 책임)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분석결과를 허위기재, 누락, 용역수행 태만 또는 “발주자”的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생되는 피해가 있을 경우 “발주자”的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하여 지정한 시간 내에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1조(용역성과품 제출)

- ① 성과품으로는 측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A4용지 크기로 통일하여야 한다.
- ② 측정기록부의 내용은 측정방법과 측정 시 기초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측정기록부는 시료 채취 후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악취측정기록부 제출 시에는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측정기록부에는 반드시 시료 채취자 및 시험분석자의 성명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12조(대가의 지급)

- ① 용역의 대가 지불은 “발주자”의 용역결과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용역실적에 따라 “발주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②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측정항목 및 측정주기의 변경 발생 시에는 측정항목별 개별단가를 적용한 용역실적에 따라 “발주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13조(계약의 해제·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본 과업내용서 제4조(용역수행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